#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04

발의연월일: 2024. 8. 9.

발 의 자:조경태・인요한・박준태

곽규택 · 송석준 · 이헌승

서명옥 • 배준영 • 조정훈

김대식 의원(1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국가 소멸의 위험에 빠진 유일한 나라로 지목되고 있음. 이러한 위험성은 수도권과비수도권의 불균형적 발전에 따른 국토의 비효율적 활용이 주된 원인임. 비수도권 도시들은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인프라에 기인한 인구유출과 그로 인한 지역 공동화의 위기를 맡고 있으며, 반면 수도권은과도한 인구유입에 따른 기형적인 고비용 도시구조의 형성으로 성장잠재력을 잃어 가고 있음.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통한 비수도권의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불합리한도시구조 개편이 필요한 시점임. 이를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의 통합이나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구역의 확대 등을 통한 지역과 국가발전의구심점인될 새로운 지방행정체제의 형성이 무엇보다 시급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 자치도로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특별광역시를 신 설하여 광역시와 도의 통합 등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을 지원하고자 이 법을 발의함.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광역시를 추가함(안 제2조와 제3조).

법률 제 호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특별시"를 "특별시, 특별광역시"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특별시와"를 "특별시. 특별광역시 및"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특별시"를 각각 "특별시, 특별광역시"로, "도 또는"을 "특별시, 특별광역시, 광역시, 도 또는"으로, "광역시·도"를 "특별광역시, 광역시, 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를 "특별시·특별광역시"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1. <u>특별시</u> , 광역시, 특별자치시,	1. 특별시, 특별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②
"자치구"라 한다)는 <u>특별시와</u>	특별시,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u>특별광역시 및</u>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	
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	
다.	<u>.</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생 략)	관할) ① (현행과 같음)
② <u>특별시</u> , 광역시, 특별자치시,	② 특별시, 특별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u>도 또는</u> 특별자치도	, 특별시, 특별광역시,
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u>광역</u>	<u>광역시, 도 또는</u>
<u>시·도</u>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	특별
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u>광역시, 광역시, 도</u>
<u>특별시</u> 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

안에 둔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 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 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④ · ⑤ (생 략)

특별시, 특별광역시
③ <u>특별시·특별광역시</u>
④ · ⑤ (현행과 같음)